##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2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최수진・김미애・서지영

박준태 • 고동진 • 김상훈

윤한홍 • 박충권 • 최보윤

조지연 · 이주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 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법률 제 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임시허가) ① ~ ⑥ (생	제37조(임시허가)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⑦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			
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			
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			
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			
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			
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			
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			
로 본다. <u>다만</u> , 해당 법령 정비	<u>&lt;단서 삭제&gt;</u>		
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⑬ (생 략)	⑧ ~ ③ (현행과 같음)		